

2023년 9월 2일 시행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해설 <김지후 교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①책형

【문41】 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 ④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 ⑤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해당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해설

①

例規 제570호[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4.07.14 예규 제402호 개정 제463호 제515호 제555호 제559호 개정 2021.06.09 예규 제570호

제2조(전자신고의 종류) (☞ 기한지변경신고,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3호-6호))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 ②
③ **例規** 제566호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3.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 (1)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
 (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 (1)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
 (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④ 4. 등록기준지의 지정·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 ⑤ 등록기준지변경신고가 있거나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전 전의 사항과 그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규칙 §66①).

정답 : ⑤

【문42】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⑤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설

- ①
②
③
④
⑤

【例規】 제591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 ③ 제2항의(㉔ 「민법」 제781조 제3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㉔ 한국인 부에 한한다)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제3조(부모가 혼인신고서 협의한 경우)

- ①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부가 외국인인 경우)

- ① 혼인외 출생자의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㉔ 「민법」 제781조 제3항)
 ③ 혼인중 출생자의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㉔ 외국인 부의 성 또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

- ①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2.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

<제2항 신설 2021.12.10, 시행 2021.12.15.>

- ③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사이의 변경은 등록부의 정정 절차에 의한다.

<제3항 신설 2022.3.21, 시행 2022.3.28.>

정답 : ③

【문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달리,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 ④ 시(구)·읍·면의 장은 한 쪽 배우자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시(구)·읍·면의 장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의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예규 제617호 양식 제33호).

③ **【例規】 제570호[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4.07.14 예규 제402호 개정 제463호 제515호 제555호 제559호 개정 2021.06.09 예규 제570호

제2조(전자신고의 종류) (註 기준지변경신고,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3호-6호))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④ 성·본창설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하고(규칙 §54),

⑤ 성·본창설자의 성(姓)을 따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55).

정답 : ③

【문44】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지며,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제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는다.
- ⑤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다만,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위 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해설

①

例規 제48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 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절차

(1)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고유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ex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④

⑤

例規 제62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시(구)·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③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제8조(국적회복통보의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하 “국적회복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ex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문45】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②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폐쇄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④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 ⑤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해설

- ① **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등록적격상실)
 -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1국민 2등록부)
 -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② **규칙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③ **예規** 제425호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④ **예規** 제247호 [현행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와 동 가족 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의 이기]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⑤ **규칙** 제65조 (폐쇄의 방법)

시·읍·면의 장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정답 : ⑤

【문46】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을 두었다.
- ② 입양의 경우 양자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③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다.
- ⑤ 혼인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 및 과거의 혼인사항이 기재된다.

해설

- ① 기본증명서에는 다른 4종류의 증명서에 없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이 있다(규칙 §2ii). ‘등록기준지란’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이나 등록기준지의 지정·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규칙 §2ii).

- ②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법 §15② i).
- ③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규칙 §21의3).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 ④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9②).

⑤ **예규 제561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혼인관계증명서)

-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문47】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그 신고의무자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망신고 - 친족
- 나. (강제)인지신고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
- 다. 혼인 중 출생자 출생신고 - 부 또는 모
- 라.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 모
- 마. (재판상)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가, 나 - 신고적격자 // 다, 라, 마 - 신고의무자

가 **법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적격자)

나 **법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고적격자)

다
라

법 제46조(신고 의무자)

-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1순위 신고의무자)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1순위 신고의무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동거하는 친족 (2순위 신고의무자)
 -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3순위 신고의무자)
-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적격자)

마

법 제7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準用 법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 ① 원처(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은 재판의 확정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처(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고적격자)

정답 : ②

【문48】 다음 중 추후보완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 유탈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 ③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분’이 누락된 경우
- ④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⑤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라 이름에 한자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① **예規** 제412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父 '未定'의 출생신고)

부(父) 미정(未定)의 출생신고란,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父)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i)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父)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ii)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iii)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iv)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v)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規** 제531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 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예規** 제573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㉔) ㉘ 도요토미에야스 ⇒ 최한국), 성·본변경절차(改前 姓성절차 = 姓성·本本절차 = 국적취득자의 성·本姓姓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할 수 없다.

⑤ **예規** 제322호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1991. 4. 1. 이후에 출생신고된 자녀의 이름이 출생신고시에는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 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한다.

정답 : ④

【문49】 인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 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의 상대방도 위 서류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혼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 ④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위 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는 때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④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고적격자)

③ **判例** 대판 2022.1.27. 2018므11273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의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의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⑤ **判例** 대판 1993.7.27. 91므306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제60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법 제57조제1항본문)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⑤

【문50】 다음 중 이해관계인이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 나.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
- 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
- 라.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

-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③ 나, 라
- ④ 나, 다, 라 ⑤ 다, 라

해설

가 - 신고인 // 나, 다, 라 - 이해관계인

- 가 **법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나 **법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법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④